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변경〉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10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4조의3제1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3. 19.
3. 회 부 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III. 검토의견

1.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4조의3제1항)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3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u>3년마다</u>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 ----- ----- ----- -----2 <u>년마다</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가 그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 제4조의3¹⁾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익보호

1) 「예술인 복지법」

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²⁾은 예술인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2011. 11. 17.) 및 시행(2012. 11. 18.) 이전인 1988년부터 3주년 주기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4조의3이 신설(2013. 12. 30.)된 이후에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7(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는 조사의 명칭·규모 방법 등을 전면 개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음.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는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24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공표한 바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23년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반영을 위하여 예술인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음.³⁾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보다 1년 단축함으로써 기술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술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는 다음과 같음.

3)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2023., p.13.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의 실태조사 주기 >

구 분	주기	근거 법령
게임	매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국악	매년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미술	매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스포츠산업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한류산업	매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1항
공공디자인	2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	2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문화다양성	2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전통문화산업	2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역서점 활성화정책	2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4)
공예	3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국제문화교류	3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문학	3년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서예	3년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지역문화정책	3년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제1항
한국수어 정책	3년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제1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최신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3년 주기의 조사로는 급변하는 예술창작·유통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조사주기 단축을 통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시행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